**화장품 기준**

2000년 9월 29일

후생성 고시 제331호

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화장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해,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며, 화장품 품질 기준(1967년 8월 후생성 고시 제321호) 및 화장품 원료 기준(1967년 8월 후생성 고시 제322호)은 2001년 3월 31일자로 폐지한다. 단, 의약품의 성분으로, 본 고시를 적용 시 실제로 받고 있는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과 관련되는 화장품의 성분인 것 또는 1961년 2월 후생성 고시 제15호(약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품목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장품의 성분을 지정하는 건) 별표로 열거된 화장품의 성분인 것에 대해서는 2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화장품의 성분 분량 또는 동 표에 열거된 화장품의 성분 분량에 한해, 화장품의 성분으로 할 수 있으며, 2001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화장품 기준**

1. **총칙**

화장품 원료는 그에 함유되는 불순물 등도 포함하여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등 그 사용으로 인해 보건 위생상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면 안 된다.

1. **방부제, 자외선 흡수제 및 타르 색소 이외 성분의 배합 금지**

화장품은 의약품의 성분(첨가제로만 사용되는 성분 및 별표 제2~제4에 열거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생물 유래 원료 기준(2003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10호)에 적합하지 않는 것,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1973년 법률 제117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제１종 특정화학 물질,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제2종 특정화학 물질 및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성상을 가진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따로 정하는 것 및 별표 제 1에 열거하는 것을 배합해서는 안 된다.

1. **방부제, 자외선 흡수제 및 타르 색소 이외 성분의 배합 제한**

화장품은 별표 제2의 성분명 란에 열거하는 것을 배합할 경우, 동 표의 100g중의 최대 배합량 란에 열거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1. **방부제, 자외선 흡수제 및 타르 색소의 배합 제한**

화장품에 배합되는 방부제(화장품 중의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화장품에 배합되는 것을 말한다.)는 별표 제3에 열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화장품에 배합되는 자외선 흡수제(자외선을 특이적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자외선에 의한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피부 또는 모발 보호를 목적으로 화장품에 배합되는 것을 말한다.)는 별표 제4에 열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화장품에 배합되는 타르 색소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 색소를 정하는 성령(1966년 후생성령 제30호)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적색 219 호 및 황색 204 호에 대해서는 모발 및 손톱에만 사용되는 화장품에 한해 배합할 수 있다.

1. **화장품에 배합되는 글리세린은 해당 성분 100g 중 디에틸렌글리콜 0.1g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